

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의안 번호	96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5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 안 사 유

-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늘어나는 폐가전, 가구등 대형생활폐기물을 수거후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수선, 보수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시민의 근검절약으로 재활용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본오동 878-1번지에 재활용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소 협소로 늘어나는 재활용품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
- 선부동 1076-10번지 사유지내에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안산시지회에서 재활용판매장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여 대형폐기물 수시 수거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재활용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.
-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함.

□ 주 요 내 용

가. 취득재산 (1건)

1) 재활용판매장 신축 (기부채납 취득)

○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시민의 근검철약으로 재활용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판매장이 장소 협소로 늘어나는 재활용품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재활용 활성화 측면에서 선부동 1076-10번지 사유지내에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안산시지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고자 함.

□ 사업 현황

- 위 치 : 안산시 선부동 1076-10번지 (대지 - 559.9㎡)
- 시설규모 : 지상3층 1,166.4㎡ (352.8평)
 - 1층 (388.8㎡) : 가전제품 재활용품 전시 판매장
 - 2층 (388.8㎡) : 가구류 및 생활용품 재활용품 전시 판매장
 - 3층 (388.8㎡) : 의류, 생활용품등 물물교환센터
- 사 업 비 : 564,480천원 (사업비 변동 가능)
- 기 부 자 : (사)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안산시지회

※ 사용료 및 사용기간은 건물 축조후 건물 기부채납액(감정평가 결정)에 상응하는 비용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만큼 무상으로 사용하되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. (무상사용기간이 지나면 유상사용, 3년에 한번씩 갱신허가)

□ 추진 계획

- 기부서 제출(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안산시지회) : 2001. 4월
-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: 2001. 5월
-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: 2001. 5월
- 협약서 체결 및 토지무상사용허가 : 2001. 5월
- 공사 착공 및 준공 : 2001. 5 ~ 7월
- 등기후 기부채납 : 2001. 8월
- 무상사용허가 및 개장 : 2001. 8월

□ 주관부서 의견 (청소사업소)

- 종량제 실시이후 폐가구·가전 제품등 대형폐기물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톤당 250천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,
- 재활용 판매장 확대 운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수선·보수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시민의 근검절약 고취로 자원 재활용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.

※ 연도별 대형폐기물 재활용으로 예산절감액 - 247,750천원

- '98년도 : 6,905건, 370.6톤, 92,650천원
- '99년도 : 6,862건, 360.8톤, 90,100천원
- 2000년도 : 4,881건, 260.0톤, 65,000천원

※ 관련법령

-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(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무), 제25조(재활용산업의육성재생사업), 같은법시행령 제29조(재활용산업육성대상업)
- 폐기물관리법 제4조(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-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6조(재활용산업의 육성)
- 공공기관의폐기물활용촉진을위한지침 제8조(국무총리 훈령 제38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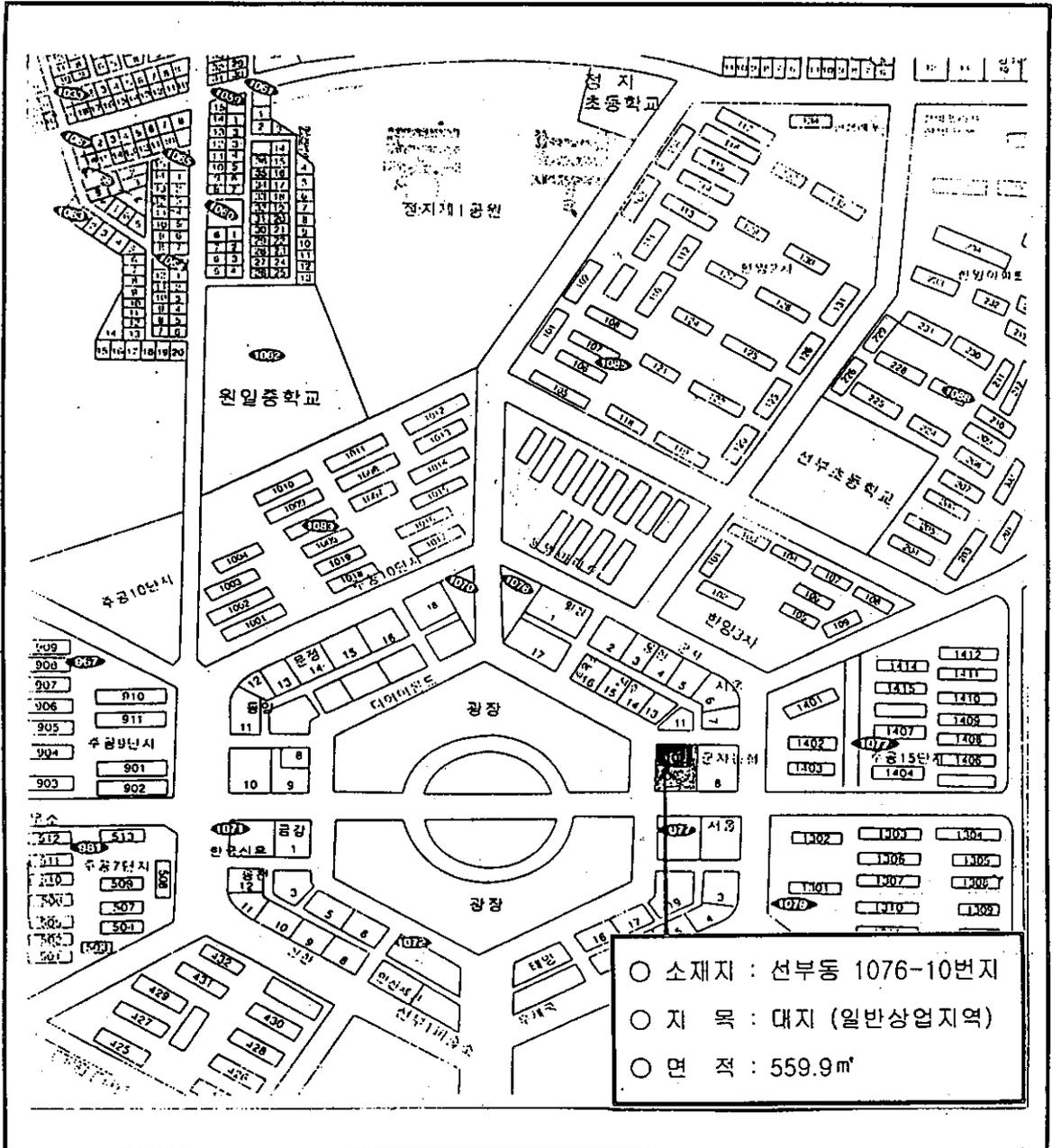
□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: 붙임

가.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(7-1)

나. 2001년도 취득재산 목록 (7-2)

□ 관계법령 발췌내용 : 붙임

재활용판매장 위치도



2001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(7-2)

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 번호	재산표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 득 사 유	취득대상소유자 주소, 성명	비고
	지목	소재지	수량					
계	토 지 건 물 기 타	1건	1,166.4	564,480	2001			
1	건 물	선부동 1076-10번지	1,166.4	564,480	2001	재활용 판매장 신축 (기부채납)		청소사업소

□ 관계법령 발췌내용

○ 지방자치법

○ 지방자치법 제35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6.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

○ 지방재정법

○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

②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

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자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)를,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
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.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건당 1천제곱미터이상)

○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

○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, 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